

협력회사 행동규범

주식회사 네패스

협력회사 행동규범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은 주식회사 네패스(이하 '네패스' 또는 '회사')와 협력회사(어떠한 명칭이든지 네패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뜻한다. 이하 같다) 간 거래의 투명성과 상호 신뢰 관계의 구축과 발전을 위하여 네패스가 협력회사들에 이를 준수할 것을 제안하고, 협력회사들이 이를 실천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네패스의 협력회사들은 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등 공급망 전반이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네패스의 모든 관계사는 사업수행 장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모든 협력회사에게 본 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기업윤리

제3조 (투명경영 및 반부패)

- ① 협력회사 임직원(계약직, 임시직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 임직원은 뇌물 제공, 향응,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네패스와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협력회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불공정 거래 방지)

- ① 협력회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협력회사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협력회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아니하며, 네패스 또는 제3자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최상의 제품·서비스의 제공)

- ① 협력회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승인되지 않거나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네패스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협력회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분쟁지역 광물 사용 금지)

- ① 협력회사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콩고민주공화국 등 10개국)에서 생산되는 광물 일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협력회사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협력회사는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 영향 등의 문제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보호)

- ① 협력회사는 '네패스 등 고객사 및 협력업체(이하 '협업 상대방')'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협업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2. 협업 상대방과의 협업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허가 내지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3. 협업 상대방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② 협력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제8조 (인권 존중)

-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사전에 고지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③ 협력회사는 임직원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정기적인 면담관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차별금지)

-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들을 성별, 인종, 국적, 종교, 나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협력회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있어서 임직원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근로시간 관리)

- ① 협력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금 및 복리후생)

-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노동 금지)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협력회사는 채용시 지원자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인 서류를 통해 지원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가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여서는 안 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협력회사는 아동 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하위 협력회사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노동과 관여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거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강제노동 금지)

- ① 협력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들을 직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 노동이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협력회사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임직원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구속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협력회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관계 및 채무 관계에 의한 강요된 노동 등에 관여하는 하위 협력회사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강제노동과 관여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거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

제14조 (친환경경영)

- ① 협력회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 영향을 완화 및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재를 확보하여 친환경경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원의 사용과 관리)

- ① 협력회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최소한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협력회사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최소한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화학물질 관리)

-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운송, 보관, 사용, 폐기 등 취급하는 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 및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협력회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폐기물 관리)

-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는 노력을 다하여, 매립 또는 소각 등 처리되는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협력업체가 제2항에 따라 부득이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잔유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제18조 (안전보건경영)

- ① 협력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재를 확보하여 안전보건경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관리)

- ①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제동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 위험 및 유해한 요소에 임직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계·기구·설비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③ 협력회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작업공간의 사고 위험 및 유해한 요소에 대한 정보를 임직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협력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 보호구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상황 대응)

- ① 협력회사는 자연재해, 집단 질병 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문서와 절차서 및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항의 표준문서, 절차서 및 지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시 임직원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탈출로, 유도등,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비상시에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고관리)

- ①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22조 (보건관리)

-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임직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또는 특수 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임직원의 작업 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사항

제23조 (리스크 관리)

- ① 협력회사는 기업윤리, 인권, 환경, 산업안전, 보건 분야의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업윤리, 인권, 환경, 산업안전, 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노력의 결과로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협력회사는 이를 완화 또는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육)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규율하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하여 임직원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신고제도)

- ① 협력업체 임직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협력회사 또는 네패스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네패스에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회사 홈페이지 : https://www.nepes.co.kr/kr/esg/unethical_information.php
 2.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15 네패스 윤리지킴이 (우 : 06719)
 3. 전화 : 02-3470-2701
 4. 이메일 : ethics@nepes.co.kr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네패스에 신고한 경우, 네패스는 신고자의 신장 및 모든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26조 (규범의 준수)

네패스는 협력회사와 계약 체결시 협력회사 임직원이 본 규범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시기

본 규정은 2022년 7월 29일 부로 적용 · 실시한다.